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
----------	----

제출년월일 : 2022. 10. 20.

제 출 자 : 평창군수^{1.}의

1. 제안이유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설립 이후 평창유산재단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라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업방향에 대한 용어를 수정하여 올림픽 유산사업의 다변화와 재단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신설(안 제2조 제3호)

- “유산사업 단체”란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나. 용어 변경

- 평화 → 올림픽
- 기념사업 → 유산사업
- 평화올림픽 → 평창올림픽
- 평화정신 → 평창올림픽정신
- 2018평창 기념재단 → 유산사업 단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09.16.~2022.10.6.)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개인정보 사전검토 : 개선사항 없음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산사업 단체”란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평화의 가치”를 “올림픽의 가치”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올림픽기념사업·문화관광·교육체육·산림부서의 장”을 “올림픽체육·관광문화·인재육성 관련 부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평창올림픽 정신과 성과의 계승·기념”을 “평창올림픽 정신의 계승”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평화올림픽 정신의 계승)”을 “(평창올림픽 정신의 계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산과 연계하여 평화도시에 대한 미래비전 확산과 평화특례시 설치 등을 통하여 평창올림픽의 정신과”를 “유산인 평창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평창올림픽이 남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 평창의 평화정신”을 “평창올림픽

정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평화올림픽”을 “평창올림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을 “(유산사업 단체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조례 제2조 제3호의 유산사업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념재단”을 “유산사업 단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념재단”을 “유산사업 단체”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를 “유산사업 단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평화”를 “평창올림픽 정신”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유산사업 단체”란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u></p>
<p>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를 통한 <u>평화의 가치</u> 실현과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이 된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책무) ----- ----- <u>올림픽의 가치</u> ----- ----- ----- -----.</p>
<p>제5조(올림픽유산발전위원회 구성과 기능) ①·② (생략)</p> <p>③ <u>당연직 위원은 올림픽기념사업·문화관광·교육체육·산림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u></p> <p>1. ~ 3. (생략)</p> <p>④ ~ ⑥ (생략)</p>	<p>제5조(올림픽유산발전위원회 구성과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올림픽체육·관광문화·인재육성 관련 부서</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u>제3장 평창올림픽 정신과 성과의</u></p>	<p><u>제3장 평창올림픽 정신의 계승</u></p>

계승·기념

제6조(평화올림픽 정신의 계승)

군수는 평창올림픽 유산과 연계하여 평화도시에 대한 미래비전 확산과 평화특례시 설치 등을 통하여 평창올림픽의 정신과 성과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

① 지역 시민사회 등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 평창의 평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평창올림픽 유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창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교류사업
3. (생략)

제6조(평창올림픽 정신의 계승) -

----- 유산인 평창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평창올림픽이 남긴 -----

제7조(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

① ----- 평창올림픽 정신-----

② -----

-----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

1. (현행과 같음)
2. 평창올림픽-----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올림픽 유산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기념재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 활용 및 관리위탁)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평창군 소유 시설물에 한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념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0조(국제행사 등 유치·개최)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시설의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8조(유산사업 단체 지원) ① --

----- 조례 제2조 제3호의 유산사업 단체-----

-----.

② -----
----- 유산사업 단체-----.

제9조(시설물 활용 및 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유산사업 단체-----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국제행사 등 유치·개최)

①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연락처	(033) 330 - 2018